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81
----------	------

제출연월일 : 2026. 7.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
-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관리·운영)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등), 제13조(재계약), 제21조(성과평가)

○ 추진 필요성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 관리 및 운영에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시설 안전관리
-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아무거나하남’ 운영 및 관리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밖에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위탁시설 개요

○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소재지	하남시 조정대로 111(풍산동)				
규 모	7,143㎡(지하 1층, 지상 4층)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안전체험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 전체면적				
인 력	계	관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무거나 하남
	29	1	23	3	2
이용인원	청소년 이용인원 : 연간 196,520명(2025년)				

○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재지	하남시 조정대로 111(풍산동)				
규 모	277.7㎡(지상 2층 일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등)				
인 력	계	관장	팀장	팀원	기간제근로자
	6 (관장 제외)	1 (수련관장 겸직)	1	4	1
이용인원	학교밖청소년 이용인원 : 249명(2025년) 학교밖청소년 성과인원 : 150명(2025년) 학교밖청소년 성과건수 : 180건(2025년)				

5. 민간위탁기간 : 2026. 12. 8. ~ 2029. 12. 7. (3년)

※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8조

6. 수탁자 선정방식

- 기존 수탁기관인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 성과평가 실시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액	산출근거
계	3,014,494	
하남청소년수련관 운영	2,628,067 (전액 시비)	- 인건비 : 1,195,636천원 - 물건비 : 214,114원 - 경상이전 : 224,681천원 - 자본지출 : 446,108천원 - 사업비 : 547,528천원
하남시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386,427 (국 139,892) (도 44,628) (시 201,907)	- 인건비 : 260,099천원 - 운영비 : 30,842천원 - 사업비 : 95,486천원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해당 사무는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 청소년수련관 사업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 사업 연속성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우선 검토 필요

9. 성과평가 결과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에 의거 성과평가 실시
- 청년일자리과 3명, 외부 전문가 2명 성과평가 결과 최종점수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96.4점 /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1.5점
- 평가결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됨

10. 향후 추진계획

- 2026. 9월 :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6. 11월 : 재계약 체결

11. 관련 법령 및 조례 : 붙임 1

관련 법령 및 조례

1 청소년기본법

제4장 청소년시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6조(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을 청소년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5.1.>

4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남시 출자·출연기관

-----제2항 생략-----

5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2., 2023.5.1. >

1. “위탁”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위탁 대상사무 선정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23.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5.1.>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5.1.>]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제)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13조(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2023.5.1.>]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2023. 5.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3. 5. 1.>